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73
----------	-------

발의연월일 : 2026. 8. 6.

발 의 자 : 한지아·박정하·이상희
최은석·우재준·배준영
박성훈·김형동·김대식
김태호·김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청소년 육성사업 또는 학대·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상담·치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시설로서 업무 성격상 아동·청소년과 반복적으로 대면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시설은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음.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단체·시설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있어 아동학대 재범 위험을 차단하고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8호 중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를 “수행기관,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3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제57조제3항제4호 중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행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56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8. 제56조제1항제27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8호·제9호의3·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6의7. (생략)

7. (생략)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9의2. (생략)

<신설>

10. ~ 26. (생략)

<신설>

-----.

-----.

1. ~ 6의7.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
-----수행기관,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9.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0. ~ 26. (현행과 같음)

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② ~ ⑨ (생 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생 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u>수행기관</u> 및 <u>다함께돌봄센터</u> 5. 5의2. (생 략)	<u>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u>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수행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5. 5의2.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u>5의3. 제56조제1항제9호의3의</u>
	<u>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u>
	<u>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u>
	<u>자통합지원센터</u>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8. 제56조제1항제27호의 정신</u>
	<u>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u>
	<u>시설</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